



할랄제품보장청장령

2022년 제40호

할랄 라벨 결정

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

할랄제품보장청장

고려사항:

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3호의 제37조 및 할랄 제품 보장 시행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39호의 제88조를 이행하기 위하여, 할랄 라벨 결정에 관한 할랄제품보장청장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.

근거:

- 일자리 창출에 관한 2020년 법률 제11호 (202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245호,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보충판 제6573호)에 따라 개정된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3호 (2014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295호,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보충판 제5604호);
- 할랄제품 보장 부문 시행에 관한 2021년 정부규정 제39호 (2021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49호,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보충판 제6651호);
- 종교부에 관한 2015년 대통령령 제83호 (201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168호);
- 종교부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2016년 종교부령 제42호 (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1495호);

결정:

다음을 규정한다: 할랄 라벨 결정에 관한 할랄제품보장청장령

일(1): 다음과 같은 로고 형태로 할랄 라벨을 정한다.



이(2): 위의 첫 번째 항에 명시된 할랄 라벨에는 인증서 번호 또는 등록 번호도 포함된다.

삼(3): 위의 첫 번째 항에 명시된 할랄 라벨은 다음에 포함시킨다.

- a. 제품 포장;
- b. 제품의 특정 부분; 및/또는
- c. 제품의 지정 위치.

사(4): 위의 세 번째 항에 명시된 할랄 라벨의 포함은 법 규정에 따라 판독 및 확인이 용이하고 쉽게 삭제, 제거 및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.

오(5): 본 법령은 2022년 3월 1일에 발효한다.

자카르타에서 제정

2022년 2월 10일

청장

할랄제품보장청

무하마드 아킬 이르함